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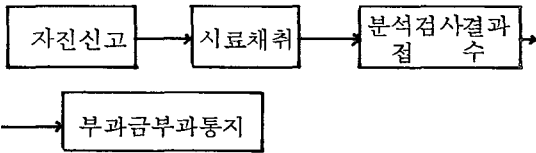
개정 환경보전법 주요내용 해설 (연재 Ⅲ)

정혁진 / 환경청 법무담당관

마. 부과금 납부통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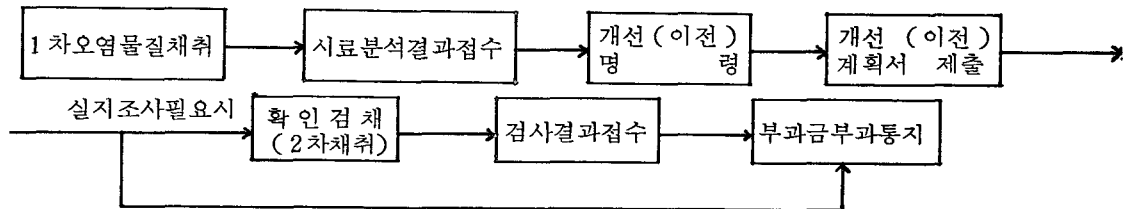
- 1) 부과권자 : 시·도지사
- 2) 통지서 발급시기

① 자진신고자 : 오염물질을 최초로 채취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5일 이내



② 무신고자

- 개선 (이전)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
오염물질량을 감소시키고자 한 때 :
오염물질 배출량 검사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
오염물질량의 조사·확인이 필요없을 때 : 개선 (이전) 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
개선 (이전)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: 개선계획서 제출만료일 익일부터 5일 이내 (20일)



실지조사불요시

3) 납부기간 : 납부통지서 발급일로 부터 30 일

4) 납부통지서 발견통지

- ① 사유 : 부과금액, 납부기한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
- ② 시기 : 기 발급한 부과통지서상의 납부 기한내

바.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

- 1) 개선 또는 이전명령 이행완료 보고
- 가) 개선 또는 이전명령 기간 만료전의

이행완료 보고

① 개선 또는 이전명령 기간은 3개월 일 경우라도 1개월내에 개선 명령 시 지정한 개선할 내용이 이행되었거나 또는 공장이전이 실현되었다면 명령이행완료 보고를 할 수 있음.

나) 개선 또는 이전명령기간 만료일까지 이행되지 않을때는 명령 불이행 이 됨.

2) 개선명령 이행상태 확인

가) 확인내용

- ①명령서상에 지정된 시설의 설치 · 개선 · 대체등이 완료되었는지의 여부
- ②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저감 되었는지 여부

나) 확인결과의 처리

(1)명령서상 (무신고자의 경우) 또는 신고서상 (자진신고자의 경우) 에 지정된 시설의 개선도 이루어지고 배출농도도 허용기준 이내로 떨어진 경우 : 명령 또는 신고 이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형태임.

(2)개선완료 신고일 이후 명령서상(무신고자의 경우)또는 신고서상(자진신고자의 경우) 에 지정된 시설의 개선은 이루어졌으나 농도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저감되지 않은 경우

㉠무신고자의 경우

- 이 경우는 다시 개선명령을 아니하고 개선공사 상황을 판단하여 개선기간을 연장하여 개선촉구하고 배출부과금은 개선완료 신고일 익일부터 실제 개선완료 예정일까지 추가분을 추징함.

- 위반회수는 1회이며 위반회수별 부과계수 1.05 적용

㉡자진신고자의 경우

이 경우는 추징을 하지 아니하고 개선명령에 의거한 2차 부과금 부과

- 배출부과금 부과기간

- 1차부과 : 신고서상 개선개시일부터 개선완료신고일
- 2차부과 : 이행확인일부터 실제 개선완료일

- 위반회수별 부과계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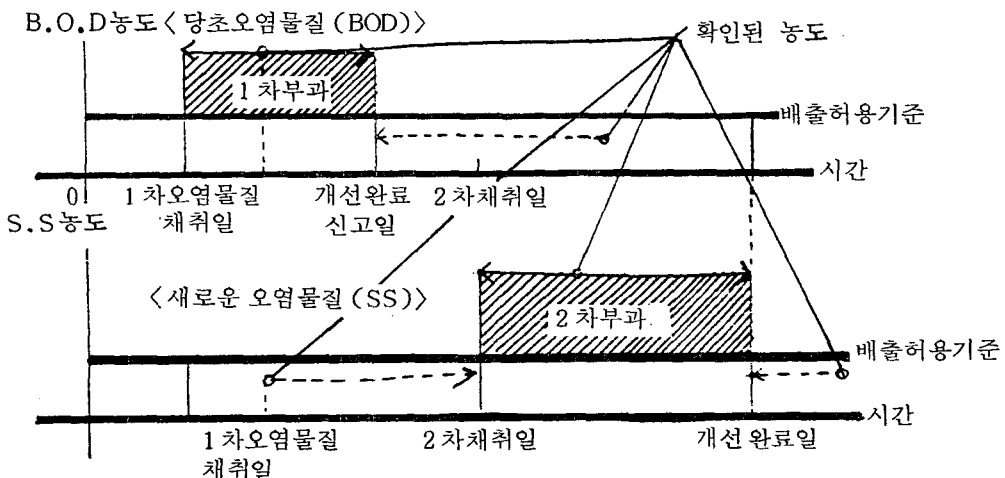
- 1차부과 : 1.00 (위반회수 0)
- 2차부과 : 1.05 (위반회수 1회)

㉢명령서상에 지정된 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

- 오염물질 채취없이 개선기간을 연장하여 개선촉구하고 추징은 개선완료일 익일부터 실제 개선완료 예정일까지 추가분을 추징함.

- 오염물질 채취가 없으므로 추징시 적용되는 농도와 배출량은 변동 없음.

㉣당초 문제된 오염물질의 개선은 이루어졌으나 새로운 오염물질이



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

- 이 경우는 새로운 오염물질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계획서를 받아 배출부과금을 부과금. 위반회수별 부과계수도 1회를 추가함.

- 배출부과금 부과기간

· BOD :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개선완료 신고일

· SS : 2차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개선완료일까지

- 위반회수별 부과계수

· BOD : 1.05 (1회위반 가산)

· SS : 1.10 (2회위반 가산)

사. 배출부과금의 환급 및 추징 (영 제17조의 13)

1) 환 급

가) 환급사유 발생

(1)오염물질 배출기간의 변경

개선 (이전) 계획서상의 개선(이전) 완료일이 앞당겨진 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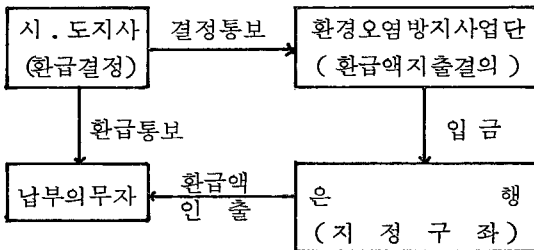
(2)오염물질배출량 및 농도가 감소된 경우

개선 (이전) 계획서에 의거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오염물질 배출량 및 농도가 감소된 때

(3)착오 부과한 경우

배출부과금 산정기준이나 산정방법에 착오가 있는 경우

나) 환급 절차



다) 환급 기간 : 30일 이내

2) 추 징

가) 추가징수 사유발생

(1)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 완료 예정일이 연장된 경우

(2)개선기간중 당초 부과시 예상했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이 실지 확인결과 변경된 경우

(3)개선완료 보고에 대한 이행상태 확인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경우

(4)배출부과금 산정기준이나 산정방법에 착오가 있는 경우 : 재산정한 부과금과의 차액

나) 추징방법

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(별지 19호 서식)에 의거 납부통지

다) 추가통지 : 사유 확인일로부터 15일 이내

아. 징수유예와 이의신청 (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 17 조)

1) 징수유예

가) 신청대상

①재해 · 도난으로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을때

②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을때

③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때

④사업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간 치유를 요하는 때

나) 신청기간

①배출부과금 납부기한이 만료되기전 : 통지서 발급일 30일 이내

②체납의 경우 체납기한이 만료되기전 : 독촉장 발급일 10일 이내

③신청기관 경과자는 사유검토후 결정

다) 처 리

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결정 : 결정통지서 송부

라) 담보제공 요구

징수유예시에는 부과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.

2) 이의 신청

가) 신청사유

- 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적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부과된 경우
- 나) 신청기간
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
- 다) 처리 수리여부 결정통지
 라) (注: 앞페이지 그림 참조)

5. 자진신고제도의 도입

가. 성실신고제도

1) 근거: 환경보전법시행령 제 17조의 5 및 제 17조의 9

- ① 불가피한 사유로 오염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못할 경우 자진신고 길을 터줌으로서 기업의 준법정신 제고
- 감시·단속을 위한 행정력 절약
 - 고의성 비정상가동자와 불가피한 비정상가동자의 차등관리를 통하여 방지시설의 가동을 향상시키고 부과금제도의 실효성 확보

②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자진신고한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조업정지 및 벌칙적용을 배제함.

나. 주요내용

1) 위반 내용면에서 (영 제 17조의 5, 10, 13)

3) 차등관리 방안

- 가) 성실신고제도 도입
- 나) 신고자와 무신고자의 차등관리
- 2) 위반의 빈도면에서 (영 제 17조의 10)
- 가) 위반회수별 부과계수제도 도입
- 나) 상습적 비정상가동자 차등관리
- 다) 신고내용
- 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 및 고장내역
- 라) 개선계획서
- ① 시설의 변경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 및 고장내역
 - ② 개선기간중 배출시설의 가동중단 또는 제한시 그 기간과 내용
 - ③ 공법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킬 경우 그 제한의 내용
- * 구체적인 개선계획은 신고서 제출후 보완제출 가능
- 마) 개선완료 확인
- ① 신고내용의 성실성 여부 확인
 - ② 오염물질의 채취·분석
- 바) 효과
- ① 배출부과금 부과 최소화 (위 그림 중 면적(1))
 - ② 개선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위반회수 불산입

구분	개정 전	개정 후		비고
		신고자	무신고자	
개선명령대상여부	대상	비대상	대상	
검체일로 소급여부	불소급	불소급	소급	
위반회수별 부과계수 적용여부	비적용	비적용	적용	부과율을 1회 위반시마다 5%씩 누증(2년단위)
직접 규제 조항	적용	배제	적용	실제개선을 요하지 않는 비정상 가동자는 반드시 적용

<참고> 자진신고와 무신고의 비교(시행령상의 주요 차이점)

항 목	자 진 신 고	무 신 고
[1] 개선계획서 제출	17 조 5	17 조 6
1. 제출원인 2. 개선계획서 내용 3. 오염상태의 추정 적용여부	○배출·방지시설의 결함 및 고장내역 ○허용기준초과 및 개선예정일 ○가동중단 또는 제한의 내용 ○공법등의 개선에 의한 오염물질 감소내용 추정적용문제미발생 (실지조사 필요)	단속결과개선명령 ○개선 또는 이전기간 ○가동중단 또는 제한의 내용 ○공법 등의 개선에 의한 오염물질 감소내용 개선계획서 미제출 또는 내용불실의 경우 검체시 오염상태 추정적용(실지조사 배제)
[2] 오염물질채취		
1. 채취목적 2. 채취원인	확 인 용 자진신고(고장 또는 수리)	적 발 용 무신고(고의성 비정상가동 또는 운전부주의)
[3] 부과금 부과 기산일	신고서상 지정일(17조9의1)	오염물질 채취일(17조9의2)
[4] 위반회수별 부과계수 (105/100)	비적용(17조의10)	적용(17조의10)
[5] 관할기관		
가. 개선계획서 접수 나. 위반여부 확인 다. 행정처분	환경지청장 또는 시·도지사 환경지청장 또는 시·도지사 시·도지사	시·도지사 좌 동 좌 동
[6] 행정제재 및 행정 형벌	적용배제가능	적 용

<연재完>

주소 변경시는 꼭 알려주십시오.

회원·회원사·명예회원 및 협회보나 명예회원보를
받아보시는 여러분께선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전화나
서면으로 본협회 홍보부에 알려 주십시오.
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대한상의 12층
(지방의 경우 본협회지부에 연락)